

#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46
----------	------

2016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 10. 31.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6. 11. 3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2. 8)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2. 9)
    - 안건상정, 원안 발의·의결

## II.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울시 감채기금 재원중 '15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1,500억원을 4,543억 500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표 2-1〉 감채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정계획 (A)	당초계획 (B)	증감액 (C)=(A)-(B)	증감사유
수입합계		471,883	167,578	304,305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454,305	150,000	304,305	'1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경비를 공제한 잔액의 50%를 적립
	기타 전입금 <sup>주1)</sup>	8,092	8,092	-	
이자수입		186	186	-	
예치금회수		9,300	9,300	-	
지출합계		471,883	167,578	304,305	
예수금상환 <sup>주2)</sup>	원금	150,000	150,000	-	
	이자	8,092	8,092	-	
차입금원리금상환		8,800	-	8,800	공공자금기금 차환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일반운영비		30	30	-	
예치금		304,961	9,456	295,505	

※ 주1) 기타 전입금 :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주2) 예수금 상환 :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수한 원리금을 상환

###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당초 1,580억 9,2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조 6,887억 8,400만원 발생한 바,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항1)에 의하면 법

1)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중 4,543억 500만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2)에서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 감채기금의 경우, 정책사업이 아닌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sup>3)</sup>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재무활동**의 지출액을 당초 계획액(1,675억 4,800만원) 대비 181.6%, 3,043억 500만원 증액된 4,718억 5,3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의회 의결대상 여부를 떠나 대규모 재원의 기금 편입이라는 점에서 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요청할 사안으로 사료됨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7.24.개정, '16.1.1.시행>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 행정자치부 질의회신(국민신문고, '16.11.8.)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승인 관련”

■ 질의요지: 별도의 정책사업 없이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만으로 구성된 기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의회의결을 미리 받아야 하는지?

- 답변요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정책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책사업이 아니라면 의회의 사전 의결대상 아님. 다만,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고 등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함

〈표 3-1〉 감채기금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계획 (A)	수정계획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총계					167,578	471,883	304,305	181.5
재무활동 (소계)					167,548	471,853	304,305	181.6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수금상환	150,000	150,000	-	-
				예수금이자상환	8,092	8,092	-	-
	보전지출	차입금원리금상환	차입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	8,800	8,800	순증
		여유자금예치	예치금	은행예치금	9,456	304,961	295,505	3125.0
행정운영경비 (소계)					30	30	-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	30	-	-

- '16년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감채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금 적립금은 '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1조 6,887억 8,400만원)에서 법정정산금(7,801억 7,4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의 50%인 4,543억 500만원에 해당함
- 다만, 동 안건은 궁극적으로는 지방채 상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전액 금고에 예치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감채기금의 조성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해연도 채무상환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바,
- 시민안전 등을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채기금에 대한 의무적 적립이 세출재원의 한정성과 이질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심사결과 : 원안의결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계수조정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 첨부 :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끝.

#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446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감채기금 재원중 '15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150,000백만원이 454,305백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나.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구분	수정계획(A)	당초계획(B)	증감(A-B)	구분	수정계획(A)	당초계획(B)	증감(A-B)		
합계	471,883	167,578	304,305	합계	471,883	167,578	304,305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sup>1)</sup>	454,305	150,000	304,305	예수금상환 <sup>3)</sup>	원금	150,000	150,000	-
	기타 전입금 <sup>2)</sup>	8,092	8,092	-		이자	8,092	8,092	-
이자수입	186	186	-	차입금원리금상환 <sup>4)</sup>	8,800	-	8,800		
예치금 회수	9,300	9,300	-	일반운영비	30	30	-		
				예치금	304,961	9,456	295,505		

1) 전입금 중 순세계잉여금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경비를 공제한 잔액의 50%를 감채기금에 적립

2) 전입금 중 기타 전입금 :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3) 예수금 상환 :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수한 원리금을 상환

4) 차입금 원리금 상환 : 공공자금 기금 차환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